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7,827,039	13,134,811
일반회계	420,401,703	12,612,051
특별회계	17,425,336	522,760
기타특별회계	17,425,336	522,7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11,775	48,353
주택사업특별회계	910,895	27,327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429,565	12,88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032,518	180,97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214,810	66,444
대지보상특별회계	361,142	10,834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945,325	28,360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275,000	8,250
학교급식지원특별회계	4,644,306	139,32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16,56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기구·직제 개편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